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28.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년 3월 26일)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 광 세)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시행과 “영등포구 기금 운용·관리 개선계획”에 따라 불부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안 제5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내지 제6조의4)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2006.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규모는 17억 6천7백만원임.

4. 審 査 結 課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시행과 “영등포구 기금 운용·관리 개선계획”에 따라 불부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정비(안 제5조 ①항 내지 ③항)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6조 ①항 내지 ②항)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정비(안 제6조 ③항 내지 ④항)
- 라.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기금관련 규정에 맞게 불부합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2007.1.25 ~ 2007.2.14) 결과 : 구의회사무국 의견 반영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이”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토목과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토목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 다음에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매회계년도마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법</u>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법</u>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생략)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기금은 <u>구청장</u>이 관리·운용한다.</p> <p>②(생략)</p> <p>③기금은 <u>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u>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p> <p>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u>출납원</u>을 둔다.</p> <p>②기금운용관은 <u>건설교통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담당주사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조(목적) _____</p> <p>_____</p> <p>_____ 「<u>지방자치법</u>」 _____</p> <p>_____.</p> <p>제2조(기금의 재원) _____</p> <p>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법</u>」 _____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u> _____ 2. (현행과 같음)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_____ <u>기금운용계획</u>에 의하여 _____.</p> <p>②(현행과 같음)</p> <p>③<u>구청장</u>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_____.</p> <p>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p> <p>①_____</p> <p>_____ <u>기금출납원</u> _____.</p> <p>②_____ <u>토목과장</u> _____,</p> <p>_____.</p> <p>③「<u>지방재정법</u>」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운용심의회)</p> <p>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토목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주사가 된다.</p>
<p><신 설></p>	<p>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p> <p>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p> <p>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p> <p>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구청장은 <u>매회계년도 개시40일전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u>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p> <p>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p> <p>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매회계년도마다 ----- -----, ----- ----- -----.</p> <p>②----- ----- -----.</p> <p>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준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p>